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2018 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요약(Executive Summary)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2014 년도 북한인권 보고서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가 정부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부인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0 월에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자의적 처형, 정치범수용소, 반인류 범죄에 해당하는 고문 행위가 북한을 상대로 각국이 경주한 일련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유엔 총회에 보고했다. 12 월에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에 의해 북한 내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참혹한 인권 유린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 총회는 “정치적·종교적 사유에 근거한 사형 구형”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앙, 의견 및 표현,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하게 제약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5 월에 북한 정부는 미국 국무장관이 관여한 외교적 협의를 통해 2017 년에 구금된 미국인 목사를 석방했다. 한국의 비정부기구(NGO)는 2007 년부터 2018 년 3 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비롯한 관련 출처를 근거로 북한 당국이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 사례가 사망자 120 명과 실종자 90 명을 포함하여 총 1,341 건으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북한 정부는 자국 국경 안에서 종교 활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구금하거나 때로는 석방한 사례가 있다. 비정부기구와 학자들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대외적으로는 관용을 가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국가로부터 인가 받지 못한 모든 종교 활동을 탄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은 접근이 차단되어 있고 최신 정보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체포나 처벌 여부 검증이 여전히 어려웠다.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종교인들이 당국에 신고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웃, 직장 동료, 기타 사회 구성원에게 자신의 종교 활동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북한 내 종교단체의 숫자와 신자 규모에 대해서는 추정이 엇갈린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다. 7 월에 국무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주최한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회의’에서 부통령은 “...북한의 기독교도 탄압은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무자비하고 조직적이며 완강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빼앗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미국은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정부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12 월에 국무부는 중대한 인권 침해나 검열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그에 연루된 단체 3 곳과 북한 관리 3 명의 명단을 적시한 북한인권침해 검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2001 년 이래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매우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용인했다는 이유로 1998 년에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특별우려대상국(CPC)에 지정되었다. 2018 년 11 월 28 일에 국무장관은 북한을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재지정하고 이에 수반하여 1974 년 무역법 제 402 조 및 제 409 조(잭슨-배닉 수정조항) 그리고 동법 제 402(c)(5)조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어 현재까지 이행중인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들을 확인했다

섹션 I. 종교 인구 구성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전체 인구를 2,540만 명(2018년 7월 추정치)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정부가 2002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종교별 신자수는 개신교 12,000명, 불교 10,000명, 가톨릭 800명이다. 해당 보고서는 19세기 한국 성리학에 기원을 둔 현대 종교인 천도교가 약 15,000명의 신자를 거느리고 있다고 밝혔다. 무속인과 상의하고 주술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널리 행해진다고 하지만 수량화하기 어렵다. 한국에 위치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러시아정교회 신부 5명이 평양에 체류한다고 보고했다. 한국 및 기타 외국 종교단체들은 북한의 종교인 수가 북한 당국이 보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엔은 기독교 신자 수를 20만 명에서 40만 명 사이로 추산하고 있다. COI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자체 수치에 따르면 종교 신자들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50년 약 24퍼센트에서 2002년 0.016퍼센트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섹션 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부 인식 현황

법적 토대

헌법은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조항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도 공식 정부문서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는 사회질서, 보건, 사회안전, 도덕 그리고 그 외 인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국가의 법으로 허용되고 제공된다.’

북한 형법은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과 전자매체 같은 것을 허가 없이 수입하거나 만들거나 유포하거나 불법적으로 보관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 형법은 “돈이나 물건을 받는 대가로 미신행위”를 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NGO 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위의 두 조항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된 종교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징역,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처형까지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북한인권위원회에 의하면, “미신행위” 금지법은 특히 점술행위를 금지하고 점술가를 투옥하려는 의도가 있다.

북한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이다.

정부 관행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종교 활동에 참여한 주민을 처형, 고문, 구타, 체포 등 가혹한 방식으로 대우했다. 종교적인 이유로 수용된 일부 인원을 포함하여 8 만에서 12 만 명 사이로 추산되는 정치범들이 외딴 지역에 위치한 열악한 상태의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기독교연대(CSW)는 기독교 신자를 구금하는 경우 연좌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곧기독교 신자의 친척은 본인의 신앙과 상관없이 구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2 월에 세계기독교연대는 탈북자가 포함된 100 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2007 년 이후로 교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24 퍼센트는 자유가 축소됐다고 답했고 13 퍼센트는 거의 변함이 없다고 답했으며 6 퍼센트는 자유가 확대됐다고 답했다.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57 퍼센트였다. 한 탈북자는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답했으며 또 다른 탈북자는 기독교 신자로 밝혀진 주민은 즉시 총살을 당한다고 답했다.

해외 종교·인권 단체들은 지하 교회 신도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체포·구타·고문·살해되었다는 다수의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내놓은 바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의하면, 수용소 내에서 종교 활동을 행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이 실종된 사례들이 2016년에 보고됐다. 국제 NGO 들과 탈북자들은 기도, 찬송가 부르기, 성경읽기 등 국가가 승인한 종교활동 이외의 종교활동은 정치범 수용소 구금 등 가혹한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 정부 산하 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에서 발간한 2018 년도 백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미신 행위와 종교 활동을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후자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했다. 일반적으로, 성서나 기독교 선교사들과 연관된 주민이나 탈북자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당국은 미신 행위에 연루된 자에게 노동교화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처벌은 뇌물을 이용하여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국 영토 내에서 종교 활동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구금했으며 간혹 석방한 경우도 있다.

5 월에는 북한 정부가 2017 년에 국가에 대한 ‘적대 행위’를 이유로 구금한 미국인 목사가 미국 국무장관이 관여한 외교적 협의를 거쳐 석방됐다. 6 월에 Religion News Service 는 이 미국인 목사가 체포자에게 자신이 범한 적대 행위가 무엇인지 묻자 그의 범죄는 기도였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타임지는 이 목사가 해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로부터 부분적으로 재정을 지원받는 사립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수주 동안 근무했다고 보도했다.

12 월에 코리아타임스는 한국 정부의 석방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3 명의 한국인 선교사가 북한에 구금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그 중 한 명은 2013 년 이래로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2014 년 이래로 구금된 상태였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7 년부터 2018 년 3 월까지 탈북자들의 증언을 비롯한 관련 출처를 근거로 북한 당국이 자국 내에서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를 1,341 건으로 집계했다. 기소 내용으로는 선교, 종교 물품 소지, 종교 활동, 종교인과의 접촉 등이 있었다. 북한 당국이 연루된 1,341 건 중 사망자는 120 명(8.9 퍼센트), 실종자는 90 명(6.7 퍼센트), 부상자는 48 명(3.6 퍼센트), 송환자 또는 강제 이주자는 51 명(3.8 퍼센트), 구금자는 794 명(59.2 퍼센트), 이동제한자는 133 명(9.9 퍼센트)이었다.

10 월에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자의적 처형, 정치범수용소,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하는 고문 행위가 북한을 상대로 각국이 경주한 일련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유엔 총회에 보고했다. 12 월에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에 의해 북한 내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참혹한 인권 유린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 총회는 “정치적·종교적 사유에 근거한 사형 구형”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앙, 의견 및 표현,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하게 제약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유엔 총회는 북한 정부가 “모든 인권과 기본권을 완전하게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연례 결의안은 안전보장이사회가 COI 의 결론과 권고 사항을 지속적으로 고려한 것을 환영했다. 2014 년 2 월에 발간된 COI 최종 보고서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의견·표현·정보·결사의 자유가 정부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부인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보고서는 또한 많은 경우 북한 정부의 인권침해 행위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반인륜적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유엔에 권고했다.

COI 보고서는 기독교가 북한의 개인 우상화 정책에 저항하고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회적·정치적 조직과 활동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동 보고서는 기독교 신자들이 정부에서 통제하는 교회를 벗어나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박해와 폭력, 가혹한 처벌에 직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동 보고서는 기독교 신자와 다른 종교의 신자들이 처벌이나 보복 혹은 감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북한에 권고했다.

탈북자들은 최근 수년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 단체에 대한 조사·탄압·박해가 심해졌다고 계속해서 보고했으나 현재 상황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었다.

통일연구원의 2018 년도 백서는 “북한 주민이 일상 생활에서 종교를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적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북한 헌법은 정권이 정책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치적 지지 계층에 주어지는 명목상의 자유만을 말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07 년과 2018 년 3 월 사이에 탈북자 12,625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9.6 퍼센트가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응답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18 년도 백서에 따르면 탈북자 12,885 명 가운데 4.1 퍼센트만이 북한에서 거주하는 동안 성서를 본 적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나 이 비율은 최근 몇 년 동안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체사상과 수령론은 이전 지도자인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현 지도자인 김정은의 개인 우상화 정책과 정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이념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었다. 종교적인 혹은 그 밖의 이유로 지도자의 최고 권위를 부정할 경우 국익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학자들은 주체사상과 김씨 일가에 대한 숭배가 일종의 국가후원 신학의 형태와 흡사하다고 말한다. 북한 전역에 약 10 만 곳의 주체사상 연구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향토 방위에 동참하고 기꺼이 국방에 동원될 것을 독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는 전무했다.

무속 신앙은 북한 내에서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행해져 왔으나 NGO 들은 평양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무속 행위가 눈에 띄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NGO 들은 정부 당국이 무속 행위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했다. 2017 년 10 월 북한인권위원회는 최소한 1 명의 개인이 점술 행위와 여타 ‘범죄’로 최근 수감되었다고 보고했다. 탈북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가장 적절한 탈북 시기를 가늠하기 위해 무속인을 찾는 당원들이 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6년 현재 북한에 불교 사찰 60 곳, 천도교 교당 52 곳, 국영 개신교 교회 3 곳, 러시아정교회 성당 1 곳 등 총

121 곳의 종교 시설이 운영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2014 년도 정부 보고서에도 불교 사찰 64 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인용되어 있으나 해당 직원들은 종교적 의미를 상실했으며 문화 유적지나 관광 명소로 보존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2015 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는 불교 사찰의 수가 60 개로 집계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이 불교 사찰을 종교 시설로 간주하거나 불교 승려를 종교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평양에는 정부의 통제 하에 운영되는 5 곳의 기독교 교회가 있는데 세 곳의 개신교 교회 (봉수교회, 칠골교회, 제일교회)와 가톨릭 교회(장충성당) 그리고 러시아정교회 정백사원 (Life-Giving Trinity Russian Orthodox Church) 등이다. 칠골교회는 고 김일성 주석의 생모이자 장로교 집사였던 강반석의 기념교회로 설립되었다. 이들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보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고, 예배가 예정대로 이뤄지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없다. 과거 평양 시내 또는 근교에 살았던 일부 탈북자들이 이들 교회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탈북자는 평양에 살았을 때, 찬송가를 들으려고 교회 밖에 너무 오래 얼쩡거리거나 매주 예배가 진행 중일 때 그 근처를 꾸준히 지나다닌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비밀스러운 기독교 신자라는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 탈북자는 예배 시 찬송가를 허용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가도록 허가함으로써 교회에 간 사람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로 전향하게 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당국이 재빨리 알아차렸으며, 이러한 결과를 막는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평양 밖에서 거주했던 다수의 탈북자들은 이들 교회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보고했고, 2018 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따르면 개신교 교회나 가톨릭 교회가 평양 이외의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통일연구원 백서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기독교 신자가 사전 예고 없이 부활절 주일에 교회를 찾았을 때 문이 닫혀 있었으며 다수의 외국인 방문객들이 교회 활동이 연출된 것처럼 보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몇 년간 평양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했던 외국 의원들의 보고에 따르면 신도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단체로 교회를 다녀갔으며 그 중에는 어린이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일부 외국인들은 현지 신도와 접촉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외국인들은 신도들과 제한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도들에 대한 당국의 통제 수준을 외국인이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당국이 이들을 긴밀하게 감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또한, 통일연구원은 2015 년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가톨릭협회,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조선종교인협의회 등 국가가 승인한 종교 단체들이 북한에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백서는 또한 러시아정교회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조선정교회위원회(Korean Orthodox Committee)의 존재를 언급했다. 2015 년 남북 종교간 교류에 관한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그와 같은 단체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는 극히 미미했다.

정부가 설립한 조선가톨릭협회는 장충성당에서 기본적인 의식을 거행하지만 바티칸 교황청과는 유대관계가 전혀 없다. 북한에는 교황청이 인정하는 가톨릭 사제나 수도자 혹은 수녀 또한 상주하고 있지 않다.

북한을 방문했던 외국인 종교지도자들에 따르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 개신교 목사들이 있지만 이들이 상주 목사인지 혹은 임시로 체재하는 목사인지는 확실치 않다.

일설에 의하면 5명의 러시아정교회 사제들이 북한에 체류중인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사목활동을 펼치기 위해 정백사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들 중 몇명은 모스크바 러시아정교회 신학대학에서 수학했다고 한다.

8 월 31 일자 <Orthodox Christianity> 기사에 따르면 키릴 러시아정교회 모스크바 총주교는 사제 2 명에게 서품을 내리고 북한에서 근무할 수 있게 했다. 기사에 따르면 북한 신학생 4 명이 지난 2 년 동안 하바로프스크 신학원에서 사제 수업을 받았다. 총주교는 비탈리 김지성 조선정교회위원회 위원장에게 “북한에 사제가 배속됨에 따라 정교회 신도들의 요구가 충족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북한 정부의 2002 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는 500 개의 ‘가정 예배소’가 있다. 하지만 2018 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따르면 그러한 ‘가정 예배소’의 존재를 알고 있는 탈북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2018 년 북한인권정보센터 백서에 언급된 1 만 2 천 810 명의 탈북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탈북자 중에서 어느 누구도 가정 교회라는 것을 본적이 없었고 응답자의 단 1.3 퍼센트만이 가정 교회의 존재를 믿었다. 북한 전문가들은 ‘가정 예배소’가 국가의 통제를 받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하부 조직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COI 보고서는 당국이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교회를 벗어나 종교 활동에 참여한 기독교인을 박해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로부터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소수의 교회를 종교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증명하는 사례로 내세우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일연구원의 2018 년도 백서에 따르면, 정부가 공인 종교단체들을 외부선전과 정치적 목적에 계속 이용하였으며 주민들이 종교 시설을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다. 일반 주민들은 대개 종교 시설을 ‘외국인 관광지’로 인식했다. 북한 당국이 후원하는 종교단체 대표들을 만나본 외국인들은 일부 관계자들은 실제 교인으로 보였지만 나머지는 교리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다. 통일연구원은 지방에 교회나 종교 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일반 주민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1 월에 NGO 오픈도어스와 Express.co.uk 는 북한 내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가 연출됐음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공개했다.

5 월에는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와 크리스 퍼거슨 세계개혁교회연맹(WCRC) 총무를 포함하여 6 인으로 구성된 WCC-WCRC 공동 대표단이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8 월에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연합감리교회의 초청을 공식적으로 수락하는 것이 허용됐다.

2017 년에 북한 외부에서 활동하는 독립 뉴스 매체인 NK News 는 최근 북한 정부가 자국 성직자를 국제 기독교 세미나에 참석시키고 킹제임스 성경의 공식 번역본을 출간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누그러뜨리려는 모습을 보이려 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해인 2017 년에 NK News 는 사립재단인 평양과학기술대학교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으며, 이 관계자는 평양 내 개신교 교회에 가끔 나갔는데 그곳 목사의 설교가 ‘대체로 좋았지만’ 정치적으로 친정부적 성향을 보이는 데 자주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과 동료들은 대학 내 작은사무실에서 새벽 6 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예배를 국한시켰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관리들이 종교 물품은 물론 정부에서 부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물품들을 찾기 위해 항구나 공항에서 반입되는 소포나 소지품을 철저히 조사한다고 밝혔다.

종교를 믿는 개인들의 일상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종교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보고는 없지만, 정부는 지하 교회 신도들이나 선교활동에 연루된 인사들을 체제전복 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들은 북한 당국이 중국에 머물면서 기독교 선교사들이나 여타 외국인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포함한 강제 송환 탈북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신교와 불교 성직자를 양성하는 3년제 대학 과정, 김일성대학 종교학과, 목사를 양성하는 대학원 과정, 기독교 혹은 불교 교단과 연계된 기타 신학대학 등 특정한 형태의 종교 교육을 일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계급과 출신 성분을 기준으로 주민의 신분을 분류하고 정치적 성향과 종교적 견해를 기준으로 정권에 대한 지지를 상징하는 ‘성분’ 제도에서 기독교 신자는 최하층을 구성한다. 성분 분류는 교육, 의료, 고용 기회, 주거 등의 분야에서 차별로 이어진다. 통일연구원에 의하면, 정부는 특히 기독교를 서구 외세의 침입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또한, 통일연구원은 당국이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자를 적발하고 파악하는 방법을 최소한 1년에 2회 이상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AP 통신이 4월에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선교사 수십 명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 주민들과 접촉했으며, 이들 선교사중 대부분은

한국인이나 조선족이었다. 서울에 위치한 선민네트워크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규호 목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최전선에서 활동하던 10 명의 선교사와 목사가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았으며 북한 정부가 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북한 정부는 중국 북동부 접경 지역에서 한국 종교단체들의 후원을 받아 수행되는 구호 및 난민 지원 활동에 인도주의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부 전복 등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이 단체들이 첩보 수집에 관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정부는 그와 같은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서 국경통제를 계속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종교에 기반한 일부 해외 구호 단체들의 북한 내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계속 허용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 내 포교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현지 주민과의 접촉에 제한이 있었고 엄격하게 감시를 받고 정부 수행원이 항상 동행했다고 보고했다. 그러한 단체들의 일부 직원은 자신의 성경책을 북한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 월에 한국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한국 정부 대변인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갈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12 월에 <미국의 소리(VOA)>는 교황청 관계자의 말을 빌어 2019 년에 교황이 방북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다.

8 월에 언론은 러시아정교회 관계자의 말을 빌어 10 월에 열릴 북-러 수교 70 주년 기념 행사에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키릴 총주교는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북한에 북한 정교회 신도 공동체가 수립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11 월에는 키릴 총주교에 이어 러시아정교회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성직자인 볼로코람스크 일라리온 대주교가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키릴 총주교의 선물을 김정은에게 전달했다. 언론은 일라리온 대주교가 러시아정교회 정백사원에서 주임 사제인 페오도르 김 신부와 함께 성찬 의식을 집전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제는 2001 년부터 2006 년까지 북한에 파견되어 평양에 러시아정교회를 수립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던 안드레이 카를로프를 추모하는 기도를 올린 것으로 보도됐다.

섹션I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현황

탈북자 증언은 종교인들이 당국에 신고되는 것이 두려워 이웃, 직장 동료, 기타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종교 활동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COI 보고서는 기독교 신앙이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메시지가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7년에 통일연구원은 북한 내에서 기독교 종교 활동이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증언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지하 교회의 존재 여부나 지하 종교 활동의 범위는 여전히 수량화하기 어려웠다. 일부 NGO와 학자들은 많게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지하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일부에서는 대규모 지하 교회의 존재에 의문을 표하고 지하 종교인들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각각의 지하 회중의 규모는 매우 소규모인 것으로 보고됐으며 일반적으로 개인 거주지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탈북자의 보고를

통해 접경 지역에서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단체와의 접촉을 계기로 북한 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종교 물품을 입수할 수 있게 됐으며 비밀 종교 회합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NGO 들은 각각의 지하교회가 잘 구축된 조직망을 통해 다른 지하교회들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그러한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외부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통일연구원에 의하면 탈북자들은 평양이외의 지역에 교구를 운영하는 공인 종교단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결혼이나 장례 등과 관련된 종교행사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섹션IV. 미국 정부 정책과 관여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식 외교 사절도 파견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6 월에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을 열었으며 두 정상은 2019 년에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

미국 국무장관은 5 월에 미국인 목사의 석방을 이끌어낸 외교적 협의에 관여했으며 북한에서 미국까지 그와 동행했다.

국무장관은 7 월에 개최된 종교적 자유의 증진을 위한 장관급회의에 성서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고문을 받고 강제로 수감된 탈북자 지현아를 비롯한 종교적 박해 피해자들을 초청했다. 북한 당국은 탈북에 실패한 그녀에게 강제로 낙태를 실시했다. 그녀는 그 이후에 탈북에 성공했다. 부통령은 “...북한의 기독교 탄압은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무자비하고 조직적이며 완강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빼앗는 경우도 많다.

단순히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죄에 해당한다. 북한 정권이 기독교인으로 지목한 주민은 처형되거나 가족과 함께 강제수용소에 수감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유엔총회는 12 월에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이 결의안은 북한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으며 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12 월에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침해 및 검열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으며 이 보고서는 중대한 인권 침해나 검열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그에 연루된 단체 3 곳과 정부관리 3 명의 명단을 적시했다.

미국 정부는 여타 다자간 포럼과 특히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 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비롯하여 인권 문제 해결이 양국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부통령을 포함한 미국의 고위 정부 당국자들은 탈북자 그리고 일부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 등 북한 관련 NGO 들과 만남을 가졌다.

2001 년 이래 북한은 특히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했다는 이유로 1998 년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특별우려대상국(CPC)’으로 지정되었다. 2018 년 11 월 28 일에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을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재지정했으며 이에 수반하여 무역법(1974 년 제정)(잭슨-배닉 수정조항) 제 402 조와 제 409 조 그리고 동법

제 402(c)(5)호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어 현재까지 이행중인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들을 확인했다.